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 2014. 05. 09.

담당 : 산학협력단 (02-950-5522)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3조(임기)	제4조(기능)
제5조(회의)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3장 제10조 ~ 11조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한국성서대학교의 기획처장, 교학처장, 교목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내부 인사는 필요에 따라 선임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산학협력단 팀장으로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업무에 관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상 중요하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